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6. 21, 김원이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8.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8. 19.) 상정 · 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8. 21.)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이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는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인규)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부터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흡하고,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금지청구권을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상생협력법에도 도입하여 수탁기업의 보유기술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탁 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u> <u>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u> <u>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u> <u>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u>